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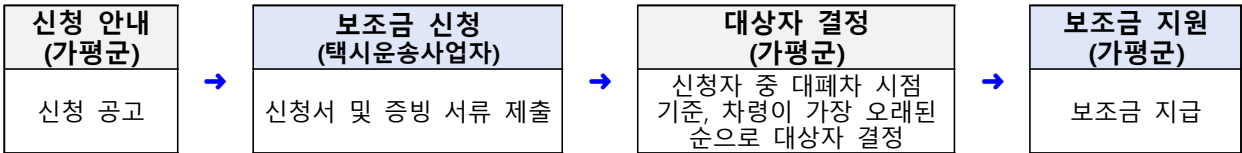
2026년 제2차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제2차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가 평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 나. 사업목적 : 노후 택시의 대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택시 사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도모
- 다. 지원대상 : 2026.1.1.~2026.12.31. 내 대·폐차 완료(예정)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라. 사 업 량 : 총 10대 (법인 4대, 개인 6대)
※ 신청 대수가 미달될 경우 구분별(법인·개인) 상호 조정
- 마. 지원내용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1대당 1백만원 지원
- 바. 지원절차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분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선정기준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차량 배분대수(개인 6대, 법인 4대) 중 기존 차량 등록일 기준 차량이 오래된 순
우선 선정 및 제외 기준	· 우선 선정 : 2025년 택시정책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 · 지원 제외 : 2025년 행정처분 및 교통사고 유발 개인택시 사업자 ※ 교통사고 이력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 기준에 따름

3.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6.(금) 18:00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가평군청 교통과 서류 제출)

다. 발표일시: 2026. 11. 11.(수) 공고 예정 ※ 가평군청 홈페이지

라. 제출서류 (제출 순서대로 첨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	별지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2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
4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5	지방세 납세증명서	-
6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서식3
7	기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기존 차량 등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대체 가능(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등)
8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
9	신규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타인 명의 계좌 보조금 지급 불가
10	통장 사본	-
11	'25년 택시 유공 도지사 표창장 사본	해당자일 경우 제출

4. 유의사항

가. 보조금은 지원사업 목적인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보조금 반환 및 취소가 되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 교통과 교통행정팀(☎031-580-22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

[illegible]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 문서 보존 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가 불가 할 수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경기도 가 평 군 수 귀중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평균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가평균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평균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등(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회사명(성명) :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 직책	성명	(서명)